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계약법령을 위반한 1인 견적 및 분할 수의계약

기 관 명 울산광역시 중구, 북구

내 용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지방계약법”이라 한다)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 제조·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,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(G2B)를 이용하여 2인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.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, 공종별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그런데도 울산시 북구 소재 ○○재활원에서는 아래 [표]와 같이 상수도 인

입공사 관련 모터펌프 구매가격이 2천만원이 초과됨에도 이를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하였고, 또한, ○○○○노인요양원에서는 동일공종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.

이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입찰의 경우 낙찰하한율(물품 구매 84.245%, 공사 87.745%)을 감안할 때 최대 9,467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.

[표] 1인 견적 및 분할수의 계약 체결 현황

<단위 : 천원>

시설명	적요	계약금액	계약업체	계약일자	위반사항
○○재활원	상수도인입공사 모터펌프구입	26,718	○○상사	2015.11.30.	1인견적 수의계약
○○시립노인 요양원	외벽도색공사	21,408	○○페인트	2014. 3.24.	분할수의 계약
○○시립노인 요양원	어르신방문교체 공사	21,497	○○○○전기	2014. 3.24	

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, 북구청장은

[통보]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하시고, 향후 기능보강사업 추진 시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정정보장치(G2B)를 이용하시며 일반경쟁을 피하기 위한 분할 수의계약을 추진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